

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장 애 인 정 책 국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 및 중앙수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시 사전 공고 등 절차 등을 신설 규정함
-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을 반영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청항목으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신설(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 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관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지원) 법 제56조의2에 따른 장애인 대상의 성 관련 상담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

4. 그 밖에 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4조의6 및 제44조의7을 각각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로 하고, 제44조의6 및 제4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이하 “성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및 성 관련 자기 옹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대처 방법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할 때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9(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다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로 한다.

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

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아.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별표 5의 I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같은 I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로 하며, 같은 표 II 제1호 나목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나목 (2)(아) 중 “주간보호에”를 “이용에”로 하며, 같은 표 II 제2호 나목 1)다) 중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1) 아) 중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을 포함하여”를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전원 또는 보행지도사를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1) 자) 중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로 하고, 같은 표 V. 제4호 다목의 배치기준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장애인 8명당 1명(8명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별표 5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전문(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 1.>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제56조 관련)

전 문 ( 6 )	의지·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팔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	---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V.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6] <개정 2024. 2. 9>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기준(제44조의9 관련)

1. 설치기준

가. 시설

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 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

수어통역사 등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공간 확보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교육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회의실·세미나실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나. 인력기준

1) 배치기준(5명 이상)

가) 중앙수어통역센터장

상근으로 1명을 둔다.

나) 종사자

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종사자를 둔다.

2) 자격기준

가) 중앙수어통역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수어통역 실무를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종사자

(1)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수  
어통역 실무를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결격사유

센터장 및 직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2. 운영기준

가. 운영방향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법 제62조2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운영보고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  
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리규정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  
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부 등의 비치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장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 (2) 직원관계철(인사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 (3) 회의록철
- (4) 사업일지(통역 및 업무일지 등)
- (5) 문서 접수·발송 대장 및 문서철
- (6) 차량운행일지

2)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2) 금전·물품의 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3) 예산서 및 결산서
- (4)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5) 비품관리대장
- (6) 후원금관리대장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회계장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동의함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p>
	2. 장애 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이전 심사 시 공단에 제출한 자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인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인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동의함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p>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신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동의함 <input type="checkbox"/>동의하지 않음</p>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발급 신청	1. 시설대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제공·처리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장애인대상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 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수급자격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추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다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까지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나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 및 동의사항

-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자동차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 표시하고 자동차체에 새로 취득한 차량의 정보를 적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 가. 신청기관 방문 또는 주민등록기관 방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나.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 다.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장애인등록증이 발송되며, 해당 주소로 발송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재발급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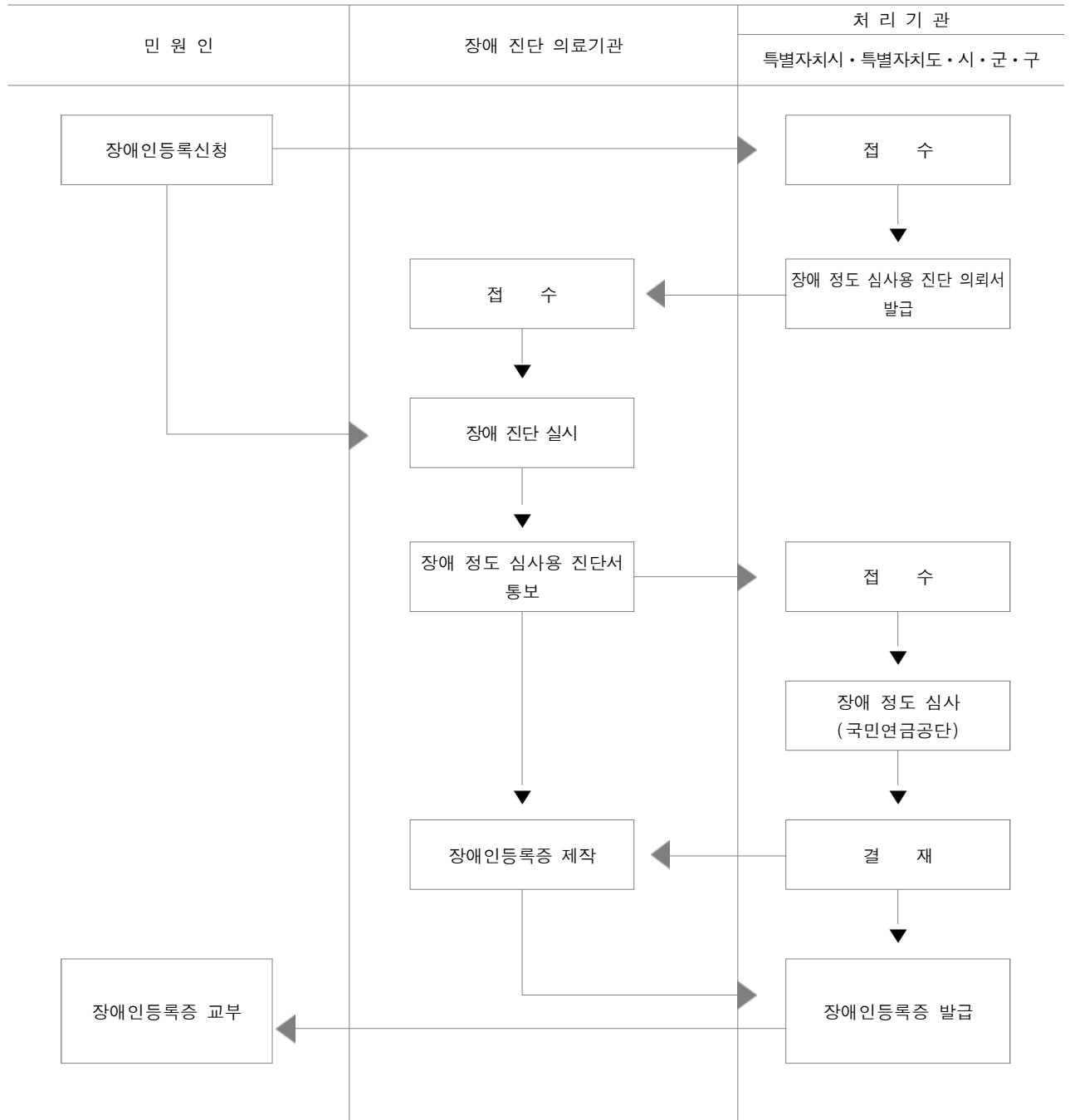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h2 style="margin: 0;">장애인증명서</h2>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명		
	주소		
	보호자(필요시 기재)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사진 3.5cm × 4.5cm			사진란 삭제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부장애 및 장애 정도	
등록번호		최초 · 재취득 등록일자	
종합 장애 정도			
제출처 및 용도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font-size: 1.2em;">시장 · 군수 · 구청장</span>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div>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40조의3 (성 관련 상담 지원)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장애인대상의 성 관련 상담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li> <li>2.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li> <li>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 · 치료</li> <li>4. 그 밖에 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lt;신 설&gt;</p>	<p>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이하 “성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및 성 관련 자기 옹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li> <li>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li> </ol>

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대처 방법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할 때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6 · 제44조의7 (생략)

<신설>

제44조의7 · 제44조의8 (현행 제44조의6 및 제44조의7과 같음)

제44조의9(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한국수어 통역센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I. 공통기준(-----

----- 장애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아.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접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어통역센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I. 공통기준(-----

----- 장애인 지역사회재

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  
-----의 경우에는 제3호  
나목만 적용한다)

II. 시설별 기준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 간보호에 필요한 설비
-------------------	--------------------------------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명 이상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  
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자) 한국수어 통역센터: 3명 이상

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  
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  
통역센터, -----  
-----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  
한다)

II. 시설별 기준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u>장애인</u> <u>주간이용</u> <u>시설</u>	(아) 그 밖에 장애인의 <u>인</u> <u>용</u> 에 필요한 설비
--	---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3명 이상

아)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전원  
또는 보행지도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

자) 수어통역센터: 3명 이상

다. 직업 훈련 교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10명당 1명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직업적응훈 련시설: 장애인 12 명당 1명 (12명 초과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	--

다. 직업 훈련 교사	1명	- <u>이용장애인 8명당 1명</u> (8명 초과시 초과인원 을 반올림하여 지원)
----------------------	----	--

[별표 6]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

전문 (5)	의지·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	--

[별표 6]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

전문 (6)	의지·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u>팔보조기학</u> 척추보조기학
-----------	--